

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 안 번 호	720호 관련
--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: 2025. 12. 3.
제안자: 재정문화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1인당 악기 대여 가능 수량을 2악기에서 1악기로 조정하여 학습 집중도 제고 및 이용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1인당 악기 대여 가능 수량을 ‘2악기’에서 ‘1악기’로 변경함(안 제30 조제4항).

부천시 조례 제 호

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.

안 제30조제4항 중 “2악기”를 “1악기”로 한다.

『위의 수정 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』

수정안 조문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<p>제30조(악기의 대여 등) ① ~ ③ (생약)</p> <p>④ 제3항에 따른 악기대여료는 1악기당 1개월에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고, 대여를 신청할 수 있는 악기의 수량은 1인 1회 <u>2악기</u>로 한다.</p> <p>⑤ · ⑥ (생약)</p>	<p>제30조(악기의 대여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악 기----.</p> <p>⑤ · ⑥ (개정안과 같음)</p>